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791
----------	-----

99. 6. 4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제1항에 “의회는 특정한”을 “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”으로 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이유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기간의 결정과 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
-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수립 및 보고절차와 존속기한, 소위원회의 활동범위와 회기중 출석 및 공무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이유 및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가능케 하며 활동계획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는 것과 소위원회의 활동범위와 출석 및 공무여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